

[별표 9] <개정 2001.7.16, 2006.6.30, 2007.3.16>

한국원자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(제323조제3항관련)

1. 내지 4. 삭제 <2001.7.16>
5. 법 제11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 제105조의 보수교육의 실시 중 법 제91조제2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면허소지자로서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